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신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이 내부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란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여 소속 기관의 행정·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
2. '공익신고'란 위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기획처에 신고·제보 하는 것을 의미
다만,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 ①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②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제3조 (방법과 절차)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직접 기획처에 공익신고서를 제출(별지 1호 서식)
2. 담당부서 공익 신고 접수 (별지 2 접수증 교부, 직접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증거자료 수집
4. 담당부서 필요한 조사 진행
단,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별지 3호서식)
6.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공익신고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4호서식)

제4조 (공익신고자보호)

1. 본 대학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단,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제외로 한다.
2. 고의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노출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본 대학은 신고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4.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불이익 처분이 신고행위와 관련 없고 신고행위로부터 유발되지 않았음을 해당 부서는 입증하여야 한다.

5. 본 대학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기관(부서)의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단,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내용 등 본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다른 법률 또는 규정, 제도 등에 의해 관련 절차(재판, 수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포상) 기획처장은 공익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 위반 법률, 구체적 위반 사항 등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대신대학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에 의거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신대학교 기획처 접수담당

(인)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서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익신고 내용			
조사결과 및 조치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20			
기획처장 (인)			

